

의안번호	2204804
의 퇴 인	박대출 의원
회 답 일	2024. 11. 1.
추계번호	24A4437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2조제1항4호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한국은행이 국채등록부에 전자등록기관 명의로 등록하여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는 국채등의 종류에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 - 4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2조제1항4호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 명의로 등록하여 발행·유통할 수 있는 국채등¹⁾의 종류에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하 ‘원화 외평채’)을 추가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라 원화 외평채 발행시 외국환평형기금²⁾의 세입변동 뿐 아니라 공자기금 차입 규모 및 상환계획 변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자비용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국채법」 상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 상 재정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상 통화안정증권

2)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2025년 외평채 발행한도액은 외화 외평채가 1.7조원(12억달러), 원화 외평채가 20조원이며, 전액 외국환평형기금의 세입(국공채수입)을 구성함
 - － 단, 2024년 원화 외평채(18조원 한도)는 10월말 기준 미발행된 상태임

[표 1]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액

(단위: 조원, %)

세입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B-A)
81. 국공채 수입	19.69	21.66	1.97
－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69	1.66	△0.03
－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8.00	20.00	2.00

주: 2024년 외화표시 외평채 13억달러(1,300원/달러), 2025년 12억달러(1,380원/달러)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현재 외국환평형기금은 공자기금 차입을 통해 원화 재원을 보유함에 따라 예수기간 동안 예수금리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함. 2024년 3분기 기준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리는 3.44%임
 - － 공자기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달리 정할 수 있고, 예탁금리는 평균조달금리에 가산금리(상한 연 0.10%p)를 바탕으로 결정함³⁾

[표 2] 2021~2024년 외국환평형기금 공자기금 예수금리

(단위: %)

2021	2022				2023				2024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1.57	1.96	2.18	3.15	3.31	4.04	3.54	3.31	3.71	3.89	3.40	3.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p.141

3)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용자조건 결정기준」

제6조(예탁 등 기간) ① 자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간 및 만기일을 달리 정할수 있다.

제7조(예탁금리 등) ① 예탁금리는 예탁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예탁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의 할인·할증발행,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을 위한 비용, 기타 기금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 0.10%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경비를 정한다.

- 다만, 2024년 18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 발행이 10월말 현재도 진행되지 못하는 등 원화 외평채의 발행 여부 및 최종 발행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24년 및 2025년 원화 외평채가 발행한도 전액만큼 발행된다 하더라도 통화안정증권 등 유사 단기물 국채와의 경합에 따른 최종 낙찰률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최종 조달 규모는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원화 외평채 발행에 따라 공자기금 상환계획이 변동될 수 있고 이자비용의 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으나 비용추계 기간의 공자기금 상환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립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정립	02-6788-4652	jitae@nabo.go.kr